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바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4

2015-4호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공통 등 7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등 5건

■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등 4건

■ 대법원 판례 정보

– 직선거법 위반 판례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자치법 개정은 지역발전 시금석(공통) (5)
- ▶ 광역 시 · 도의원에 정책지원 보좌관 배치(공통) (7)
- ▶ 김기영 충남도지사, 대통령에 ‘내포신도시 발전’ 건의(충남도) (9)
- ▶ 서울시의회, 예산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 창립(서울특별시) (11)
- ▶ 전국 첫 ‘상시예산’ 재정혁신.. ‘혈세누수’ 사전에 막는다(경기도) (12)
- ▶ 광주-대구 ‘달빛동맹’ 조례제정 눈앞(광주광역시) (14)
- ▶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소속 법정공방.. 결론은(제주도) (16)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구강건강 증진 조례(부산광역시) (19)
- ▶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대전광역시) (20)
- ▶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21)
-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24)
-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25)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 광진구) (27)
- ▶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 송파구) (29)
-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 중랑구) (30)
- ▶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충남 금산군) (32)

최근 제 · 개정 법령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35)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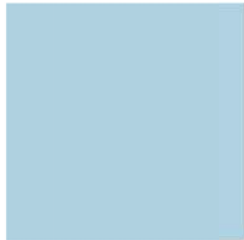
대법원 판례 정보

-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42)
- ▶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 (47)
- ▶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 판례 (57)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공통

“자치법 개정은 지역발전 시금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정안 충청권 토론회 개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 관계설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지난 17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충청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지난 3월 대구(영남권역)와 전주(호남·제주권역)에서 토론회를 한 데 이어 세 번째 토론회로서 충청권 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순은(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최진혁(충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지역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어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확실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개정돼야 함을 알렸다.

이동희 회장은 “네 차례의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정 보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지방의회가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지방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특별위원회 개정안이 마련돼 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오는 5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공통

광역 시·도의원에 정책지원 보좌관 배치

국회 안행위, 지방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의원 1인당 1명씩 배치
시·도의회 환영 속 예산부담 우려

광역 시·도의원들에게 앞으로 보좌관 형식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1명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문제점은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완하기로 했다.

심의 초반에는 이들 보좌진을 시·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정 의원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도의원들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정부담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시·도 지방의회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 재정 규모가 20여년 전 지방의회 출범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커져 시·도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다.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보다 심도 있는 견제와 감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좌관 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 의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충남도의회

김기영 충남도의장, 대통령에 ‘내포신도시 발전’ 건의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 시대의 중심지로 육성 지원 요청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포신도시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7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가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충남의 현안사항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 시대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은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추진 ▲3대항만 특성화 사업의 국가사업 추진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구청사 조기매입 주관부처의 조속한 결정 등이다.

또한 김 의장은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과 5월중 예정인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줄것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경제·홍보 수석 및 행자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계 도입, 부단체장·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지방의원 의정비 법정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 전문위원의 정수·직급을 조례로 규정, 지방의원 상해 등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와 함께 소득 및 소비 정체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지원확대, 지역의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최저임금 상향,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newsis.com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예산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 창립

서울시와 교육청의 전체 예산과 지방세 체계 개편,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방법 등 연구를 위한 서울살림포럼 창립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연구하는 '서울살림포럼'이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시의회가 14일 전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전체 예산과 지방세 체계 개편,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시의회는 서울살림포럼에 31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10개 중 가장 참여의원 수가 많은 단체라고 시의회는 전했다.

서울살림포럼 대표로 선출된 김선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의회에서 재정운영과 예산심의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속 정당과 상임위를 초월해 서울시 건전 재정을 위한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창립총회 축사에서 “재정은 저수지의 물과 같아 평소에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물을 대야 가뭄이 드는 위기상황이 왔을 때도 대처가 가능하다”며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전국 첫 ‘상시예산’ 재정 혁신.. ‘혈세누수’ 사전에 막는다

금년 6월부터 내년도 ‘연정예산’, 편성지침 각 실국별 전달하여
 법정경비·운영비·경상비 등 우선 심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상시예산편성 계획 실행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전국 최초의 상시예산 도입이 가시화됐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에 ‘연정예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일단 도는 남경필 지사의 예산상시편성 목표를 실행하고자 초기 단계에 실행할 수 있는 경직성 예산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진행되는 예산은 법정경비, 운영비, 경상경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 예산의 경우 6월 이전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차후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일단 의무적 지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조기에 마치고 추후에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6월 예산심의를 위해 오는 30일 각 실·국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의무적 지출 예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23일과 24일에는 시·군과의 연정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17일과 3월24일, 4월3~4일 개최됐던 시·군 토론회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도의회의 입장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20~21일까지 진행된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보고를 마쳤으며 도의회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바로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의 지방정부 예산편성이 일방적이었다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시예산편성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소통의 예산’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상시예산편성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6월26일까지의 일정으로 연정예산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6월 중순까지 도의회와 주요 예산 반영사업에 대한 협의가 종료되면 각 시·군이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별사업 예산을 편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진욱기자



광주-대구 ‘달빛동맹’ 조례제정 눈앞

광주시,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의회에 제출, 대구시도 내달
상정 예정...의회 통과 무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달빛동맹(대구 달구벌-광주 빛고을)’ 조례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달빛동맹’ 을 외친지 4년차를 맞아 지속적인 교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추진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14일 개원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달빛동맹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달빛동맹 민관협력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광주시와 함께 발의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까지 관이 주도한 두 지역 간 협력업무가 민간 주도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몇 차례 발표한 두 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라 구성할 민관협의회의에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도 지난달 20일 민관협의체 구성 및 양 지역 민간 교류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개최하는 제23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선 관 중심 일변도의 교류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만나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쯤 양 지역의 교류협력 사업이 발표되곤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점이 조례 제정으로 보완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례제정 추진에 앞서 광주와 대구는 2012년 7월 수도권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 달빛동맹을 맺고, 상생협력을 위한 10개 어젠다를 설정했다. 2013년 3월에는 23개 사업(10개 분야)으로 교류 폭을 확대해 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소송 법정공방...결론은

의회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 8일 법정공방을 이어감

지난 1월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8일 법정공방을 이어나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 2차 변론을 가졌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한 데 따라 촉발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2차 변론에서는 의회는 시종 추천절차가 무시된 인사발령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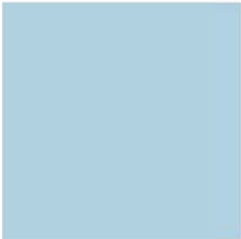
반면 제주도는 인사발령 전날 도청 관계관이 의장을 만나 인사발령 예정사항을 설명한 점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추천권'은 강제성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한차례 더 변론을 갖고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판결선고기일은 빠르면 5월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철수 기자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조례

(제정) 2015-04-01 조례 제 5131호

□ 주요목적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주요내용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구강건강사업
3.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
4.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보건용품 지원사업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2.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2015-04-17 조례 제 4436호

□ 주요목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주요내용

제2조(우대 및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대상은 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분주민세에 한한다)의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
2. 유공납세자 : 제1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선정기준 및 절차) ① 유공납세자는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② 유공납세자의 선정인원은 자치구별 납부자 수와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자치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
3.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1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04-13 조례 제 5471호

□ 주요목적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 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절차 및 방향
2. 세부적인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사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사 인건비
2.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4-13>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하고,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된 의료기관과 간병사 파견업체는 간병사의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간병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간병사의 자격 등) ① 간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간병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간병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병사 고용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성을 지닌 파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사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허위로 간병사 운영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위원회 의원
4. 사업 관련 담당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4-13 조례 제 5471호

□ 주요목적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

□ 주요내용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5.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4-08 조례 제 4887호

□ 주요목적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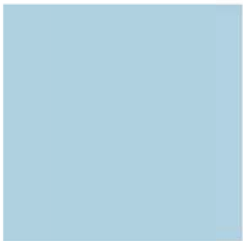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4-10 조례 제 854호

□ 주요목적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0.]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 4. 1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 4. 10.>
3.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 4. 10.>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4-2 조례 제 1252호

□ 주요목적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 ·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3조(활동범위)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2015.4.2>

1.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2. 쓰레기무단투기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활동
3.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4.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5. 취학아동 등 · 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 <신설 2011.1.1>
6. 그 밖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개정 2011.1.1>

제4조(관리 · 운영)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총괄은 노인복지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개정 2006.6.26, 2011.1.1, 2014.11.20, 2015.4.2>

제5조(지원서류) 골목호랑이어르신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1. 추천(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5.4.2>

제6조(활동정원)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 정원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5.4.2>

제7조(활동 연령)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 연령은 관할동에 거주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만 8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1, 2015.4.2>

제10조(활동시간) 근무활동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4.2>

1. 동절기(11월~2월) : 08:00~10:00, 15:00~16:00 <개정 2015.4.2>
2. 하절기(3월~10월) : 07:00~09:00, 16:00~17:00 <개정 2015.4.2>

제11조(의무사항) 골목호랑이어르신로서의 품위 유지와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활동비 지원)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4.2>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4-16 조례 제 1049호

□ 주요목적

지진에 의해 시설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고 평가 단원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5.4.16>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단원의 교육·훈련)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 구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현장조치) ①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등급 :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②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차단 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조치 또는 정밀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의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도평가위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위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04-15 조례 제 1973호

□ 주요목적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개정 2015.4.15>

- ①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개정 2015.4.15>

- ① 공동생활의 집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15>
- ② 경로당을 활용 또는 공동생활의 집을 신축하여 설치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한다. <개정 2015.4.15>
- ③ 개인주택에 설치할 경우,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 10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지정된 마을 이장을 통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
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
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4.15>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5.4.15>

1.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2회 지급
3. 그 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제8조(시설물관리) 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경로당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마을이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마을이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생활의 집으로 지정된 마을은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 <개정 2015.4.15>

⑤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은 공동생활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4명 미만이 된 경우 <개정 2015.4.15>
2.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경우 <개정 2015.4.15>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한 경우 <개정 2015.4.15>



최근 제 · 개정 법령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26185호 / 시행일 2015-04-07)

□ 개정이유

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연계하고, 보조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추가하며,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연령요건을 완화하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공동기금 조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연령요건 완화(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 1)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전업농업인 등의 경우에는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에는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그 요건을 완화함.
- 3)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경영이양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접지불제도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연계(제3조의2 신설)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하고, 직접지불제도(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함) 적용대상 농지도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함.

다. 약정 해지 또는 해제 시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제한(제5조제2항제1호 신설)

- 1) 현재는 임대방식으로 경영이양한 후에 지가 변동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용이하게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약정 상대방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경영이양 농지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3) 약정 상대방이 자유롭게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업농업인 등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고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토지면적의 상한 신설(제8조제4항, 제32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 신설)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토지 면적의 상한을 정하도록 함.

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 해지 및 해제 사유 추가(제13조제1항제6호 신설)

실질적인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전업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을 함으로써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도록 함.

바. 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 추가(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 단서 신설)

- 1)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과도한 농업인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득보전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타 보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
- 2)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액(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요건 명확화(제27조제2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농업에의 이용기간 요건(3년 이상)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아. 마을공동기금 조성·운용의 법령상 근거 마련(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1) 현재는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조성방법 및 사용주체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2) 마을공동기금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서 관리협약에서 정하는 조성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운영위원회가 운용하도록 함.
- 3) 마을공동기금을 통한 마을활성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183호 / 시행일 2015-04-07)

□ 개정이유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대응과 시·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실·국·본부를 증설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안전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에도 읍장·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의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실·국·본부 증설 및 시·도지사 직속 설치 허용(제6조제5항, 별표 1 및 별표 2)

- 1) 시·도의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증설하고,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의 직급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으로 함.
- 2)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읍장·면장·동장의 직급기준 등 정비(별표 3 및 별표 7)

- 1) 종전에는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를 처리하는 읍장과 동장에 대해서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장에 대해서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2)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을 5급 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7호 / 시행일 2015-04-16)

□ 개정이유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82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의 범위, 수산직접지불금 중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잘못 지급된 수산직접지불금의 환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제2조)

- 1) 수산직접지불금의 신청 제외 대상자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등으로 정하되, 직장가입자 중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은 수산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 일정한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 등은 「소득세법」에 따른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함.

나.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금의 범위(제4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수산직접지불금 중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수산직접지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다. 수산직접지불금의 환수(제6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수산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이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하려면 서면으로 환수금액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은 환수금액 등의 고지일부터 최대 40일 이내로 정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06호 / 시행일 2015-07-01)

□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의 범위 확대(제3조)

빈곤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함.

나. 개별가구 실제소득의 확인 및 가산 근거 마련(제5조제3항 신설)

개별가구의 실제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합산하되, 퇴직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기준(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1)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후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감액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출이 필요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함.

2)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토지 등의 일반재산, 현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으로 하고, 재산의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부양의무자 범위 확대(제5조의6제1항제4호 및 제2항)

1)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서,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형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제21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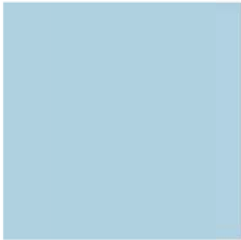
자산형성 지원대상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바.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을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대법원 판례 정보





공직선거법 위반

(출처 :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수39 판결[당선무효확인소])

【판시사항】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제2항) 취지는, 정당에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경선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결과를 보호하고 나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7은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과 아울러, 어느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부정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를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않고 변경되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무효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자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보자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의 이 사건 당선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가치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에 2014. 6. 4. 실시되는 비례대표대구광역시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 비례대표대구광역시회의원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이하 ‘후보자 선정투표’라 한다)에 앞서 투표용지의 유·무효 판단 기준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의 관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후보자 선정투표는 2014. 5. 13. 실시되어 총 365명의 경선 선거인단이 참여하였는데, 그 개표결과 총 365장의 투표지에서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70장 및 관인은 날인되어 있지만 다른 무효사유가 있는 6장을 제외한 나머지 총 289표 중 피고가 최다인 114표를, 원고가 차순위인 111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4.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 측 개표 참관인이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한다는 등의 ‘투표결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한 것인 점, 그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투표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없는 투표지 70장을 유효투표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재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없는 투표지의 유효·무효 판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없는 투표지 70장을 추가로 개표한 결과 관인 누락 이외의 무효사유가 있는 7장을 제외한 나머지 총 358표 중 원고가 적다인 141표를, 피고가 차순위인 131표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2014. 5.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대구광역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이하 ‘후보자명부’라 한다)를 1순위 후보는 피고, 2순위 후보는 원고로 확정하여 2014. 5. 16.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마. 그 후 2014. 6. 4.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717,289표, 새정치민주연합이 244,233표, 통합진보당이 24,157표, 정의당이 29,120표, 녹색당이 11,024표를 각각 득표하여, 2014. 6. 5. 새누리당에 2명, 새정치민주연합에 1명의 의석이 각각 배분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 1순위 후보자인 피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109조는, 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3항),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10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제13호) 제54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투표용지가 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되었고 경선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하여 투표한 것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경선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효표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와 같이 관인이 누락된 투표지 70장을 무효표로 보아 피고를 1순위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나. 따라서 후보자명부의 1순위 후보자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위반되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가 후보자 선정투표에서 1순위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1순위로 추천되었으므로,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도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제2항) 취지는, 정당에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경선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결과를 보호하고 나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7은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과 아울러, 어느 정당 내부

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부정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를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되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무효 사유는 이를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 10. 14.자 2004주8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이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그 후보자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보자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에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등록은 당내경선의 재심절차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 등이 후보자 선정투표에 앞서 합의한 투표용지의 유·무효 판단 기준의 내용에 근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의결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고위원회 의결대로 피고를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상 1순위로 추천한 것과 이에 따른 피고의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등록은 유효하고, 달리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규정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의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등록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678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69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 행위에 대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의 범위 및 죄수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도 선거비용의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2]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 이라 한다)의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무거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당선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 이라 한다)가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만을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행위는 이와 달리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공동피고인 5에 대한 금품 교부 관련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4와 공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5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및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또한 원심공동피고인 5에게 송금한 70만 원은 원심공동피고인 4가 지급한 것인데 원심공동피고인 4 등이 피고인 3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이상 이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3이 이 부분에 관한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유세차량 사용료 지급 관련 부분

1)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도 선거비용의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유세차량에 유세장비를 제작·설치하여 공소외 2 후보자 측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차량 자체는 공소외 2 후보자 측에서 직접 물색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 점,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1에게 하루 15만 원씩 계산하여 2.5톤 차량을 임대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나 2012. 3. 29. 위 차량이 고장 나 선거운동에 이용될 수 없게 되어 2012. 4. 1. 이를 반환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1에게 위 차량의 제작을 맡긴 2012. 3. 23.부터 유세장비의 해체작업을 완료한 2012. 3. 31.까지 9일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13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1이 이를 승낙하여 간이영수증과 농협계좌번호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2012. 5. 3.경 위 계좌로 135만 원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의 임차비용은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의 지위에서 그 교부를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위 차량은 2012. 3. 29. 하루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차비용 15만 원만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35만 원 중 하루 임차비용 1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120만 원은 피고인 1이 그 교부를 약속한 선거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120만 원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120만 원과 관련한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누락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선거비용 초과지출 관련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래핑 작업비 10,450,000원, 공소의 4 주식 회사와 공소의 5에게 지급된 각 30만 원의 차량임차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1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지위에서 사임한 2012. 4. 6. 이후 지출한 비용인 현금 다과비 398,990원 중 141,990원, ○○ 선거사무소 법정수당 216만 원, 유세차량 유류비 407,500원, 장갑·다과류 구매비 827,780원, 매일페인트 광고사 현수막 등 비용 15만 원은 피고인 1이 지출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래핑 작업비 10,450,000원, 공소의 4 주식 회사와 공소의 5에게 지급된 각 30만 원의 차량임차비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회계보고 허위 기재 및 누락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 관련 부분

1)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 제2항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및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를 각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를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사무장 등이 저지른 일정한 중대 선거범죄는 선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또한 후보자와의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총체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후보자를 공범으로 인정하여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려에서,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선거사무장 등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같은 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이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할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한다). 이는, 다른 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당선의 효력과 관계있는 선거법 등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전단이 선거법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로의 취지이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그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무거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당선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평가한 후 그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해석하거나 나머지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선거사무장 등이 그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만을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행위는 이와 달리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가 아닌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로서 피고인 1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범죄인 피고인 2에 대한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의 6에 대한 범

정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외 7에 대한 2012. 4. 8. 및 2012. 4. 9.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외 8에 대한 2012. 4. 8.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으로,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로서 피고인 1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범한 판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외 7·공소외 9·공소외 10에 대한 2012. 4. 3.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소외 8에 대한 2012. 3. 30., 같은 해 4. 2. 및 같은 해 4. 5. 법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거쳐 이를 또 하나의 형으로 정하여 분리하여 선고하였다.

3) 먼저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공소외 6에 대한 78,000원의 법정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채택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다음으로 공소외 6에 대한 78,000원의 법정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공소외 6에게 1일당 20,000원의 식비를 포함하여 1일당 7만원씩 13일간 910,000원(=70,000×13일)의 법정수당·실비를 2012. 4. 19.경 공소외 6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소외 6에게 추가로 식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2 후보자 지지 연설을 하러 다니던 공소외 6에게 78,000원(1일당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6에게 매일 법정 수당·실비 외로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13일간 대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 역시 피고인 1이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6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13일간 대납하여 준 것으로 사실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라는 전제하에 그 전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로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범죄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공소외 6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 1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에서 사임한 이후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 1이 2012. 3. 29.부터 2012. 4. 5.까지 공소외 6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 1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며, 이 두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12. 3. 29.부터 2012. 4. 5.까지 공소외 6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시켜 형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에서 정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후원금 수입이나 지출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함에 있어 수입이나 지출내

역이 일부 기재가 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회계보고를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보고·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경합범 처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공동피고인 5에 대한 범정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 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2추169 판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 소] [공2013하,1986]

【판시사항】

[1] 상위법령에 따라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로 광주광역시의회위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이루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장 등 후보자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장단점을 경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보를 추천하면서 위 경과보고서를 첨

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 구 지방공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 문】

피고가 2012. 6. 20.에 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경위와 그 내용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 30. 피고의 제20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이하 ‘이 사건 조례안’ 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14. 광주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조례안 중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조례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6. 20. 제208회 임시회에서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인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등 후보자를 결정한 후 인사검증공청회를 주관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4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며(제5조), 인사검증위원회는 사장 등 후보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인사검증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사검증공청회 경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인사검증공청회 경과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



고, 위 경과보고서에는 대상자별 장단점 등을 기술하되 서열이나 점수는 매기지 아니하며 사장후보의 추천을 제한할 수 없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 경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는 것(제8조,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본문은 지방공기업 사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3 제1항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그 지방의회의 추천하는 사람 2인,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사장 등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한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한을 둬으로써 지

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외에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 5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하에 전속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아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한 인사검증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하는 것이고, 인사검증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작성 하면서는 후보자에 관한 서열이나 점수를 매기거나 사장 등 후보의 추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나 광주광역시장이 위 경과보고서에 기재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로, 피고의 의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이루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장 등 후보자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장단점을 경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보를 추천하면서 위 경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본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5년 5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1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